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. 2. 23

제 안 자 : 송은섭 의원외

가. 수정이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제4조제1항제7호의 조문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제4조제1항제7호“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”을 “이사의 구성
및 의결권 행사와”로 수정함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7호 “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”을 “이사의 구성 및
의결권 행사와”로 한다.

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정관) ① (생략)</p> <p>7. <u>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4조(정관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7. <u>이사의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</u></p>